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74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백종현
이현승 · 고동진 · 유용원
윤한홍 · 최은석 · 김대식
구자근 · 박충권 · 이만희
최보윤 · 이달희 · 김장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인·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 본문 중 “만료되지 아니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⑦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날부터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심

사할 때 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의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간 내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⑦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관련법령이

<u>마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정비된 날부터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u>
⑧ (생략)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심사할 때 제2항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과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의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